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바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1

2016-1호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조례
 -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5건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경기도의회 굿모닝 한 · 일 위안부 문제 합의 촉각 폐기 촉구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충청남도 주요 제 · 개정 조례

-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5)
-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7)
- ▶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 ▶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6)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1)
- ▶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8)
-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31)
-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33)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 ▶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36)
- ▶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37)
-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38)
-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41)
- ▶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43)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경기도의회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즉각 폐기 촉구 (46)
- ▶ 전북도의회 비현실적인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폭 개선 (48)
- ▶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비리 남 탓,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49)

최근 제 · 개정 법령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53)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4)
- ▶ 노후준비 지원법 (57)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59)
- ▶ 조경진흥법 (61)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3)
- ▶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66)





충청남도 주요 제 · 개정 조례



1.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조례 제4062호, 2015.12.3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조례 제4076호, 2015.12.30., 제정]

□ 주요목적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 및 방향
2. 세부계획
3.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그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②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관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때
2.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협의·협조사항)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조례 제4079호, 2015.12.30., 제정]

□ 주요목적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등에 따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또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지정)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지원
2. 공예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 지원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교육사업 지원
5.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및 정보제공, 알선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지원
7.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지정 및 지원
8.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예심사위원회설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우수 공예품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당해 공예분야 지원·지정 사업별로 구성한다.

제6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의 도지사가 부의하는 공예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공예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공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지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의 심사 종료와 동시에 해촉 절차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10조(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조례 제4082호, 2015.12.3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낙농산업”이란 「낙농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7. “축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8.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9.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란 각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체간 협력)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도지사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도지사는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가축 개량·증식 지원에 관한 사업
3. 조사료(초지, 산지생태 포함) 및 사료품질·제조시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4. 낙농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 홍보 및 수급·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
7.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8.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9.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10.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1. 친환경 우수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12.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지원에 관한 사업
13.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관한 사업
14.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응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15. 가축전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업
16.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17. 축산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③ 제2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도지사는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의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축산과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도에 주소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선도농업인
3.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대표
4.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축산분야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축산과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을 준용한다.

5.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충청남도조례 제4090호, 2015.12.30., 제정]

□ 주요목적

「대한민국헌법」과 관계 법률에서 보장된 충청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 받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이란 청소년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 안 청소년”이란,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5. “학교”란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들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노동인권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호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 그밖에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은 그 노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구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하고, 더 나아가 이 권리를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밖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실현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활동
3. 효율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4. 통합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해당 안전망(이하 “안전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상호 공동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④ 도지사와 교육감은 청소년과 이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하여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⑤ 도지사와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남지방고용노동(지)청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2. 학교 안·밖 안심알바센터의 설치·운영

- ⑥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보호대상 권리) ①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1. 헌법에 따라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호를 받을 권리
2.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3.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받을 권리
4.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5.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를 받을 권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권리
 - 가. 임금 등 근무조건(현장실습의 경우 실습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부상, 장애 등을 입은 경우
 - 다. 사용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헌법과 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채용에 따른 근무조건을 법령에 따라 결정하거나 채용 이후 근무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청소년과 그 친권자에게 근로계약서(현장실습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 제7조에서 같다)에 근무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의 서명날인 후 해당 청소년에게 1부를 교부할 의무
2.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무형태 및 업무를 시키지 않을 의무
3.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
4.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
5. 그밖에 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준수할 의무

제7조(친권자의 의무준수 등) ① 친권자(법 제66조에 따른 후견인을 포함한다)는 헌법과 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친권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청소년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무조건과 업무장소 등 업무환경을 자세히 확인한 후 친권자동의서를 작성할 권리와 의무
2. 청소년이 제5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학교의 장(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학생에 한정한다.)에게 알릴 권리와 의무

제8조(보호사업)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헌법과 법에서 정한 노동안전, 근로기준, 직장내성희롱예방 등 교육사업
2. 현장실습·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는 청소년의 상담 및 구제 사업
3. 그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보호사업의 통합적 시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동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기본이념, 제4조의 책무 및 보호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년 노동인권 보호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교사, 도지사 소속 공무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전담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고용노동관서
 2. 시·군
 3. 공인노무사회·변호사회
 4. 노동자·사용자 단체
 5. 교사·학부모 단체
 6. 청소년 단체
 7.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8. 그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관계기관 소속된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구축·운영
 2. 보호사업의 시행
 3. 그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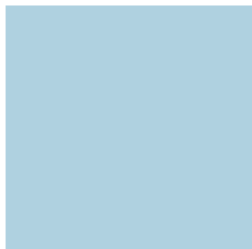
제11조(보조금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보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보호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101호, 2016.1.7., 제정]

□ 주요목적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서울시 계약 사용자”란 서울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와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제4호의 감정노동 종사자 중 특별히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년마다 지정하는 직군을 말한다.
6. “고객”이란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서울시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서울시 계약 사용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모든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업무 스트레스”라 한다.)의 예방 및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

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2.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전망
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서울시의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호방안
6. 개선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7.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모범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일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이드라인의 공표)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감정노동 사용자·서울시 계약 사용자·고객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모든 사람이 감정노동 종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
2. 감정노동 업무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처우 보장 의무
3.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공간 보장 의무
4.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무
5. 감정노동 종사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의무와 감정노동
6. 종사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폭행·괴롭힘·성희롱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 부여 의무
7. 감정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의무
8. 감정노동 종사자의 자기보호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의무
9. 감정노동 고위험직군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방안

③ 시장은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모범 매뉴얼의 배포) ①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서울시 계약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이 때 모범 매뉴얼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각 기관이 시행할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교육의 내용과 형식
2. 각 기관이 마련할 감정노동 종사자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수칙
3.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고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 작성 방식
4. 각 기관 유형별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 모두가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수칙

② 시장은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서울

시 모범 매뉴얼을 포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직장 내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
2.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급자가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감정노동 관련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점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급자는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여야 하는 점
4.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보장
5. 부당한 대우를 당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 중단 시간에 관한 사항
6. 개별 감정노동 종사자가 응대하기 어려운 고객의 요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
7. 악성민원 처리 전문가 양성, 숙련된 상급자의 악성 고객 담당, 악성 고객 전담 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고객과의 민원문제를 인사 및 근무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여 무리한 감정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점
9. 직장 내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전달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에 관한 사항
10. 기관장, 중간 관리자, 감정노동책임자,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관련 교육의 체계적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시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기관내 휴게시설)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

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애
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제16조(보호조치) ① 제15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울시 감정노동 사
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각 호의 보호 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신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
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
2.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 종사자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④ 금지행위 해당여부·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보호조치 준부 등 금지행
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나 서울시 감정
노동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
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① 서울시 감정노동 사
용자는 매년 제15조의 금지행위 발생 현황과 제16조 제2항의 감정노동 종
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내에 아래 구성원으로 된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을 각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서울시 인권위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권고,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 실천규칙에 대한 심의·자문
3.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0조(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매년 보고하는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3.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5.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6.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7.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관별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시행 2016.1.4.] [경기도조례 제5129호, 2016.1.4., 제정]

□ 주요목적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부모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①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②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부모학습기관의 설립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강원도조례 제3962호, 2015.12.31., 제정]

□ 주요목적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강원도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강원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 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16.1.1.] [부산광역시조례 제5298호, 2016.1.1., 제정]

□ 주요목적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한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및 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학교를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사업이나 학교의 선정을 위한 신청 등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는 학교에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㉓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146호, 2016.1.1., 제정]

□ 주요목적

광명시민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회로 결성된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광명시발전연구회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란 광명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결성된 광명회, 강원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를 말한다.
2. “광명시발전연구회”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시민화합 행사 등
2. 광명시발전연구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제5조(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시민화합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감사패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87호, 2016.1.8., 제정]

□ 주요목적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 2016.1.13.]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568호, 2016.1.13., 제정]

□ 주요목적

옥천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조리·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식품관련 전문교수 또는 요리전문가
2.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옥천군지부장
3.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발굴 및 육성)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조사·연구
 2. 향토음식 요리법의 표준화 및 조리책서의 발간
 3. 향토음식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6. 향토음식 경연대회
 7.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등) 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제1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지원
2. 타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 2016.1.11.]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532호, 2016.1.11., 제정]

□ 주요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통한 배상과 사고 당사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6.1.1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187호, 2016.1.11., 제정]

□ 주요목적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6·15, 10·4선언의 실현
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4. 이북도민 안보현장 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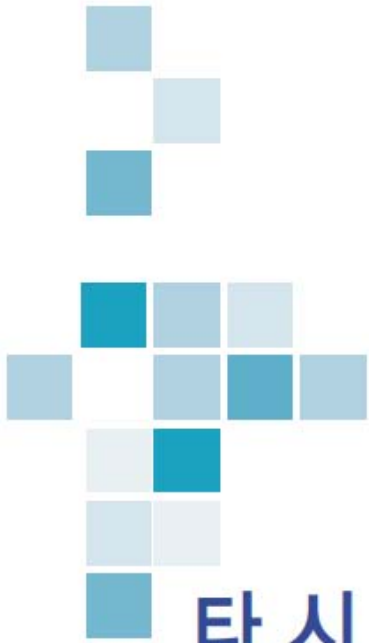
② 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통일운동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즉각 폐기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이하 여가교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1월 18일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대운, 박옥분, 김미리, 조광희, 진용복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비밀리에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말하며 협상의 즉각 폐기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최근 아베 총리의 발언과 언행 등을 볼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본과,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밀실 합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며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정대운의원은 “정부의 성급하고 미숙한 협의로 인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더욱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고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진정한 사과와 법적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경기도 청소년 독도역사수호단 학생과 학부모 13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승규(광명 소하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과거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할머니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현실적인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폭 개선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례에서는 재난발생 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 한도가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 및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가 기존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늘어나고, 융자한도액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최의원은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은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비현실적인 주택임차비용 지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재난관리기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리 3~5%(변동금리)의 기금융자 이율도 시중이율과 동떨어진 이율책정이라는 최의원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도민안전실 측의 현실적인 이율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비리 남 탓,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라

1월 28일 전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위원장 박춘식 의원)는 27일 있었던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사과와 비리근절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학교급식 특위는 지난해 11월 27일, 6개월간의 특위활동 결과 5,905억원의 학교급식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의뢰하였으며, 지난 1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20%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762억원의 입찰방해와 10억원 상당의 편취, 교직원의 760만원 횡령 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학교급식 특위의 수사의뢰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힌바 있다.

도민들은 급식비리에 대한 경악과 충격 속에서도, 그래도 이번 사태가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가는 진통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교육청의 27일 기자회견은 도민들의 이런 소망과 기대를 무참히 배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급식비리’에 대해서는 남 탓으로,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때 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발표를 보면서, 이것이 경남 교육 수장의 현실인식이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박춘식 위원장은 “경남 교육청은, 학교급식 비리는 대부분 학교급식 업체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책임이거나, 행정

사무조사 특위의 잘못된 법 해석 탓이라고 돌리고 있다. 그리고 ‘선량하게 학교급식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신해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행정사무조사 이후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식자재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라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에게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이, 식품비 관련 공급횡령 및 금품수수는 전체 지적금액 대비 0.001%에 불과하며, 급식관계자 비리로 유일하게 지적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의 투명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급식관계자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이런 광범위한 위법사항들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결과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발표라며, 교육청의 무신경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상의 식자재를 2인 이상 전자계약으로 구매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하고,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 및 의도적 분리발주를 한 특혜계약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인데도 이를 법령 해석상의 견해를 달리 한다거나 현장여건 운운하는 행태는 낯 뜨거운 자기 변명임을 지적했다.

만약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한 건만 발생하여도 해당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문책과 징계가 따를 일인데도, 도 교육청이 수천



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례를 두고도 현장여건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찰담합 비리 발견이나 친환경 식자재 검수 등이 힘든 것은 일선 학교의 현장 여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4년여에 걸친 교육청 감사나 학교급식 행정에서 광범위한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자기 검열 시스템과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청의 발표는 “일말의 반성도, 개선의지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으로, 학교급식 비리 은폐에 더하여, 도 의회 조사특위에 화살을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2010년에도 경남 경찰청의 급식비리 수사로 교장과 학교급식 관계자 67명이 입건된 바 있고, 2013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위반 급식계약이 1,144건 213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법과 비리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으며, 교육청의 반성없는 태도를 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학교급식 특위는 학교급식 비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다 근본적인 비리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교육감이 약속한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의 조속한 이행과 그 동안 도와 시군에서 식품비 명목으로 지원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용 사용한 보조금 78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반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030호, 2015.1.20.,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茶) 음료는 전체 음료시장에서 7.4퍼센트(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총 2,738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탄산음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료로 인식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부모 계층에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차는 음료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식품과 관련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차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으로 주 수입원인 동남아지역의 작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차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차 산업 진흥에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품질향상 지원, 차 문화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9.] [법률 제13086호, 2015.1.28.,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소기업 제품 등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청장 등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 나.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함(제4조).
- 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6조)
 - 1)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는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제7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및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소상공인 창업 지원(제8조)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정함.

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등으로 정함.

사.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제11조)

1)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과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함.

2)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제13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제15조)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차.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제16조)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제18조)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5호, 2015.6.22., 제정]

□ 제정이유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준비가 안 된 노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이 재무·건강·생애경력·여가·대인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및 후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후준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가 통합되고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함(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라. 노후준비 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둠(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조사·연구·

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연금보험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 [법률 제12949호, 2014.12.31., 제정]

□ 제정이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고, 과학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주체인 사업자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운영자”로 명확하게 정의함(제2조제3호).

나.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고 환경법령 등에 따라 확정이 가능한 시설을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정함(제3조).

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제4조).

라.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제6조).

마.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의 범위에서 정

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조).

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정함(제8조).

사. 해당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함(제9조).

아. 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제16조).

차.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조).

카.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18조).

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하도록 하고, 예비조사 후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제급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및 제25조제3항).

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하. 보장계약의 체결, 구제급여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하는 운영기관은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5. 조경진흥법

[시행 2016.1.7.] [법률 제12988호, 2015.1.6., 제정]

□ 제정이유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임.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을 조성하고 조경분야를 진흥시켜 도시민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조경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관광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조경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의 구현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한정하여 적정한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제14조 및 제15조).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안전번호의견15-0347 회신일자2016-01-08

【질의요지】

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식품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의견 및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이하 “양산시 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양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산시 조례안 제3조제1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산시 조례안에서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양산시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제2항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무는 시장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 사무의 일종으로써,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의 규정 등에 따라 시장에게 주어진 예산편성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시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양산시장이 의무교육기관에 대해 반드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등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산시 조례안 제5조2항에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안전번호의견16-0012 회신일자2016-01-29

【질의요지】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및 이유】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진안군조례안”이라 함) 제12조의2는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제1항에서 의료원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안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진안군조례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진안군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안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같은 조항 제1호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진안군조례안에서 감면 신청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진안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진안군조례안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의 내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원은 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달리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조례안에서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여부에 달

린 것이고, 달리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는 없습니다.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진료비 감면 대상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조례안에서 군수의 재량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감면 대상자를 정하여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군수의 사전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의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례안의 대상자이기만 하면 군수가 모두 사전승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의 내용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위배거나 군수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조례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